
엠씨넥스 기업윤리규정

2007. 01. 01

제 1조 (목적)

본 기업윤리 규정은 (주) 엠씨넥스에서 이루어 지는 모든 거래의 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올바른 가치 판단의 기준 및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주)엠씨넥스 임직원 및 당사에 파견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 3조 (임직원 기본 윤리)

1. 회사의 명예는 개개인의 행위와 연결됨을 인식하고 명예와 품의를 손상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2. 회사의 비전과 방침에 따라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며,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3. 회사의 재산을 잘 유지관리하고, 회사와 관련된 정보는 기밀로 유지하고 회사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4. 우리는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회사와 개인의 발전을 도모한다.
5. 직무와 관련하여 판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취하지 않는다.
6.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행위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4조 (고객에 대한 책임)

1. 임직원은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으며,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 건의사항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3. 고객의 발전과 회사의 발전이 동일함을 인식하고 고객에게 실질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4. 임직원은 고객에게 최고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사로부터 납품받는 원료, 부자재 및 부품이 회사의 규격 및 안전규정에 위반되거나 위조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한다.
5. 고객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 및 관리한다.

제5조 (주주에 대한 책임)

1. 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기업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동시에 증대시킨다.
2. 업무 수행 중 회사와 개인의 이해상충이 불가피 한 경우, 회사,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행동한다.
3. 공인된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를 투명하게 작성하고 관리하여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신뢰를 제고한다.
4. 직무 수행을 통해 취득한 내부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족, 친지 또는 지인 등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6조 (협력사에 대한 책임)

1. 임직원은 정정당한 방법으로 거래에 임하며, 선의의 경쟁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2.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정당하고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자격을 구비한 협력사에 대하여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으로 합리적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4. 신규 거래시 당사와의 거래에 대한 기본 지침과 윤리경영 실천에 대한 설명을 한다.
5. 협력사에 대한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명성 확보에 주력한다.
6.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나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거래를 단절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7. 공정거래와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해당 법규에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7조 (임직원에 대한 책임)

1. 임직원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개인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
2.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업무수행상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3. 미성년자의 노동조건과 최저 노동의 연령기준은 국가별 노동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한다.
4. 폭행, 협박, 감금 그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5. 인종, 국적, 성, 연령, 학벌, 종교, 지역, 장애 등을 이유로 차등하지 않고, 평등한 기회 및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8조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1. 회사는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성실한 납세를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2. 현지의 법규와 규정, 지역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예절과 품위를 지킨다.
3. 환경 관련 국내외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4. 기업을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

제9조 (관리 및 징계)

1. 회사는 본 기업윤리 규정을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2. 만약 이 사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해당자에 대해서 경고, 감봉,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 불법행위가 클 경우 불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내 및 국외기관의 신고절차를 거쳐서 징계할 수 있다.

제10조 (윤리경영 준수 및 평가)

회사는 윤리경영 제도를 확립하고, 준수하며 수시 평가를 통해 회사의 윤리경영에 최선을 다한다.

1. 사내캠페인 전개
2.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3. 윤리경영 교육 강화
4. 윤리경영 전담 조직 운영 등 인프라 정비
5. 협력회사와 공존공영
6. 윤리경영 이행진단과 평가

제11조 (거래업체 윤리경영 평가)

회사는 주 거래 공급업체의 윤리 경영 평가를 주기 및 수시 단위로 관리 감독할 수 있다.

1. 공급업체 윤리 경영 평가 순위화
2. 주기적인 실사 실시.
3. 협력회사의 윤리 경영 이행 진단
4. 회사는 주 거래 공급업체의 근로 기준 준수 여부를 주기 및 수시 단위로 평가 한다.

제 12조 (임직원 윤리강령)

첨부 1 : 윤리강령 및 청렴의무 준수서약서 첨부 파일 참조

제13조 (경영 관리)

노동법, 윤리, 규정 등은 인사팀장이 관리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5 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첨부 1. 윤리강령 및 청렴의무 준수서약서

